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

김혜경*

국 | 문 | 요 | 약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의 처벌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의 인명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입법적 대책으로서 평가받기 어려움으로 인해, 보다 중한 책임부과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산업재해 이외에도 시민재해를 포함함으로써,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등이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등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권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동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차용하고자 시도하였던 모범사례가 바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다. 2007년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영국은 처벌의 이원화를 구축하여, 안전주의위반으로 인한 치사 또는 살인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개인의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반면 법인의 처벌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영국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였다. 동법이 시정명령(remedial orders),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publicity orders)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서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벌로는 '상한 없는 벌금'을 입법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를 처벌하기 위한 영국의 양형기준을 그 단계별로 살펴보고(II), 구체적으로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어떠한 양형인자들이 고려되고 반영되어 기업처벌의 양형을 산정하게 되는지를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III).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한다(IV). 물론 법체계상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차이가 있으나, 기업의 중대재해의 책임부과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나, 양형기준위원회에서의 양형기준설정이 판결결과에 대한 경험적 통계방식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비됨을 고려할 때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박사

과거의 판결사례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이나 인자의 설정에 있어서도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2.6.30.2.33>.

❖ 주제어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양형기준, 양형인자, 기업과실치사법, 양형위원회, 중대산업재해

I. 들어가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약칭)’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동법의 해석을 두고도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¹⁾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의 처벌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의 인명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입법적 대책으로서 평가받기 어려움으로 인해, 보다 중한 책임부과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산업재해 이외에도 시민재해를 포함함으로써,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등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권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통해 인명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귀속을 명확히 하고 있다.²⁾

한편 동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차용하고자 시도하였던 모범사례가 바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다.³⁾

-
-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비판에 관하여는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 제6조와 제7조를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제35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2/3, 191면 이하; 심재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9, 39면 이하; 전형배,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노동법포럼 제34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11, 267면 이하; 조흥학,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소고”, 노동법논총 제53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12, 1면 이하;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9, 1면 이하; 한성훈,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4, 99면 이하 등 참조.
 - 2) 울산세이프티 <https://ulsansafety.tistory.com/4065>(검색일: 2022. 5. 10)에 따르면 동법이 시행된 직후인 1월 29일 경기 양주에서 청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천공기 2기, 굴삭기 1기가 매몰되어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월 9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같은 달 11일에는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후 3월 13일까지 총 1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입건되거나 조사중에 있다.

2007년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법인도 사인과 마찬가지로 살인범죄를 성립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동일성 이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담당자나 경영진의 부주의와 범의가 범죄성립의 핵심요소였지만, 기업과실치사법으로는 기업의 과실만 증명되면 상한없는 벌금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안전주의위반으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영국은 처벌의 이원화를 구축하여, 안전주의위반으로 인한 치사 또는 살인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개인의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반면 법인의 처벌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게 된다.⁴⁾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영국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였다. 동법이 시정명령(remedial orders),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publicity orders)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서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벌로는 ‘상한 없는 벌금’을 입법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를 처벌하기 위한 영국의 양형기준을 그 단계별로 살펴보고(II), 구체적으로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어떠한 양형인자들이 고려되고 반영되어 기업처벌의 양형을 산정하게 되는지를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해 확인해

3)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관하여는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12, 181면 이하;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국외 기업범죄 유형 분류와 범형상 제재수단 규정 등 실태 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15면 이하 참조.

4) 또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책임귀속을 위하여,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relevant duty of care)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는 위반행위가 일정한 상황 하에서 해당 조직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못미치는 정도일 것을 의미하며, 그 본질적 요소로서 조직내 경영진의 조직관리와 구성방식이 중대한 주의의무로 인정될 것을 요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 및 안전의 전반적인 관리, 직원 선임 및 훈련, 작업 시스템의 구형 및 직원의 감독과 같은 광범위한 고려사항 등이 주의의무위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된다. Corporate Manslaughter, Updated: 16 July 2018[Legal Guidance, Violent crime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corporate-manslaughter> (방문일: 2022. 4. 13)]

보고자 한다(Ⅲ).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한다(Ⅳ). 물론 법체계상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차이가 있으나, 기업의 중대재해의 책임부과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나, 양형기준위원회에서의 양형기준설정이 판결결과에 대한 경험적 통계방식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비됨을 고려할 때 과거의 판결사례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이나 인자의 설정에 있어서도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기업과실치사법 제정과 양형기준의 설정

1. 산업보건안전법상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제정배경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전에는 위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the Health and Safty at Work Act 1974)에 의하거나 보통법(Common law)이 적용되었다. 산업보건안전법은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와 같은 개인에게 제33조에 의하여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의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이 이사나 안전배려담당자 등의 동의나 묵인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해당 이사나 안전배려담당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보통법에 의하여 사업장과 관련한 사망사고에 개인 중과실치사죄(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를 적용할 수 있는데, Southall 철도사고에서와 같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보통법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와 경영진의 안전배려의무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사와 같은 경영진이 안전배려의무란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부과된 법적 의무로 보고, 해당 의무위반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이사와 같은 개인의 안전배려의무의 존재, 해당 의무위반,

의무위반과 치사상의 결과 사이의 상당한(substantial) 원인관계 및 위반이 모든 정황 하에 범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나아가 다수의 개인들이 존재할 경우 각 개인마다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지만, 모든 관여자의 의무위반 총합으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법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Southall 사건⁵⁾에서도 GWT의 중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기업의 유죄인정은 안전배려의무가 회사를 지배하는 자('controlling minds')의 중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동일성이론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법상의 동일성이론은 기업구조의 이원화를 전제로 하위직 종업원은 단순한 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업 자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업의 대표자는 회사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회사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는 곧 기업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소위 'controlling minds'의 중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철도회사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⁶⁾

이처럼 동일성 이론에 의하여 반드시 기업의 정신을 지배하는 자의 의무위반을 확정하여야만 기업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노동당은 1997년 집권당으로서 관련 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5년 3월 행정부가 기업과실치사법을 공표하였으며, 2006년 7월 20일 하원에 법안이 상정되어 같은 달 26일 공포되었다.

2. 2015년 개정 기업과실치사죄 양형기준(2016년 시행)

가. 2016년 보건의 안전위반, 기업과실치사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된 이후 2010년 2월 9일 양형위원회는 기업과실치사 및 사망을 초래하는 보건 및 안전범죄(Corporate Manslaughter and Health and Safety Offences Causing Death)와 관련된 최종 양형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간 법원이 기업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이 2010년 양형기준이 제시한 처벌에 관한 접근방

5) R. v. Great Western Trains Company Limited(1999년 7월 27일)

6) 동일성이론에 관하여는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12, 50-55면 참조.

식에 비하여 매우 온건하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2016년 2월 1일에 보건 및 안전위반, 기업과실치사 및 식품안전 및 위생 위반에 대한 최종지침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이 발표되었으며, 범죄행위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 발표일 이후에 선고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기존의 2010년 양형지침에 따라 선고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 요구되는 안전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체로 소규모의 기업이어서 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된 고위 경영진의 실패를 식별할 수 있었고, 개별 이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식별을 추적하여 왔다. 특히 판사는 Cotswold Geo 사건, JMW Farms 사건⁷⁾, Lion Steel 사건 및 Murray 사건에서 2010 양형지침을 매우 많이 반영하였다. 양형지침에 의해서 고려되는 주요 사안은 사고의 심각성, 재정적 정보, 기업규모, 벌금과 배상의 수준, 소송비용, 공표명령 및 시정명령이다.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영국 양형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범죄, 기업과실치사 및 식품안전과 위생위반범죄 양형기준(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guidelines)를 2014년 11월 12일에 제출하였고, 2015년 2월 18일까지 관련 상의를 종료한 이후에 2015년 11월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출간하여, 2016년 2월 1일 이후에 선고된 모든 기업과실치사법 위반범죄에 이를 적용하였다.

2016년 2월부터 적용되는 2015 양형지침은 모든 보건 및 안전 사건의 유죄판결, 특히 기업과실치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있어서 기업범죄자를 선고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2015 양형지침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과실치사죄에 양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9단계를 따라야 한다.⁸⁾

7) Health and Safety Executive Northern Ireland v JMW Farms Ltd Unreported May 8, 2012 (Crown Ct (Belfast)). 2010년 11월에 동 기업의 직원인 Wilson은 지게차의 포크에 있는 커다란 금속 통의 내부를 세척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베일 압착기 위에 서 있었는데, 그 금속 통이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는 쓰레기통 옆으로 뛰어내렸고, 쓰레기통이 그의 위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는 지게차의 포크 위치가 쓰레기통의 슬리브 위치와 일치하지 않아서 쓰레기통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8) 이하의 내용은 영국 양형위원회에서 기업과실치사법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개정한 양형기준에 관한,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나. 2015 양형기준의 적용단계

(1) 1단계: 범죄의 심각성 판단(Determining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정의에 따르면 기업과실치사와 관련된 해악과 책임은 매우 중대할 것이고, 모든 사건에서 높은 수준(high level)의 사망과 기업과실을 수반할 것으로, 법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범죄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음의 질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⁹⁾

범죄 심각성 판단 요소
(a) 중한 부상을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는가? 보통 중한 부상이 예견될수록 범죄는 더 중해진다. 관련기관, 직원 또는 타인의 경로나 조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고(near misses)’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상해의 보다 큰 예측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b) 위반자가 적절한 기준에 얼마나 못 미쳤는가? 위반자가 적절한 기준에 현저히 못했을 경우, 과실의 정도는 높을 수 있다. 업계인사 인정되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 감독 및 보고 준비의 불충분이 고려되어야 할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다.
(c) 해당 기업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위반이 얼마나 빈번한가? 규정불이행(non-compliance)의 만연한 정도, 예컨대, 위반자의 운영 또는 대리인 전반에 걸쳐 모범사례로부터 체계적으로 이탈하거나 조직결함의 정도 또는 지표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규정불이행의 만연은 보다 심각한 위반을 드러낼 수 있다.
(d) 사망자가 한명이상이거나 더많은 위험이 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추가적인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가? 사망자의 수가 많을수록,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을수록 보다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A와 B로 범주가 구분된다.

범죄 카테고리 분류
범죄 카테고리(Offence Category) A: (a)-(d)에 대한 답변이 높은 수준의 위해성 또는 과책을 나타내는 경우
범죄 카테고리 B: (a)-(d)에 대한 답변이 낮은 수준의 과책을 나타내는 경우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6 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출처로는 the guideline(s) on the Sentencing Council website: www.sentencingcouncil.org.uk 참조.
 9)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6, 22면.

(2) 2단계: 시작 지점(starting point) 및 카테고리 범위(Starting point and category range)

범죄의 범주를 A, B중 결정한 후, 법원은 다음 장에서 범죄자에 대한 관련 표를 구분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규모의 조직을 위한 표가 있다.¹⁰⁾

2단계에서는, 법원은 벌금에 대한 시작 지점에 이르기 위해 연간 매출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다음 법원은 양형요소를 악화시키고 완화시키기 위해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단계에서는, 법원은 제시된 벌금이 비례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다른 재정적 요소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재무정보의 확보이다. 범죄자는 지난 3년간의 총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이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공개가 안되거나 법원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범죄자로부터 청취한 증거나 사건의 모든 정황으로부터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련있는 조직의 자원이 사용가능하고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범죄자가 법원에 입증하지 않는 한, 법원 면전의 기업과 관련된 정보만 고려될 것이다. 기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1) 기업의 경우: 연간 회계, 매출액, 세전 이익, 이사의 보수, 대출계좌, 연금충당금, 대차대조표에 공시된 자산 등.

(2) 합자회사의 경우: 연간 회계, 매출액, 세전 이익, 동업자의 인출금(drawing), 대출액 및 연금규정 등

(3) 지방정부, 소방당국 및 이와 유사한 공공 기관의 경우: 연간 세입 예산(ARB)은 매출액과 동등하게 조직의 규모를 가장 잘 나타낸다. 부적절한 지출이 제시되지 않는 한 특정 지출이나 적립금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4) 의료 트러스트(Health Trust)의 경우: 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의 재무강도와 안정성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와 연간수치를 www.monitor-nhsft.gov.uk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0)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6, 23면.

(5) 자선단체의 경우: 연간 회계감사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함이 적절하다.

(위반조직이 매우 대규모여서 위반조직의 연매출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형량을 얻기 위해서 제안된 형량 범위 밖으로 이탈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우선 대기업의 매출량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인자의 반영을 통해 각각 구간을 선택하게 된다. 4개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¹¹⁾

대기업(Large Organisation) 매출량 £50 million 이상(약 794억 이상)		
범죄 범주	시작 지점	카테고리 범위(category range)
A	£7,500,000 (약 119억)	£4,800,000 - £20,000,000
B	£5,000,000 (약 79억)	£3,000,000 - £12,500,000

중견기업(Medium Organisation) 매출량 £10- £50 million 이상(약 159억-794억)		
범죄 범주	시작 지점	카테고리 범위(category range)
A	£3,000,000 (약 47억)	£1,800,000 - £7,500,000
B	£2,000,000 (약 31억)	£1,200,000 - £5,000,000

소기업(Small Organisation) 매출량 £2- £10 million 이상(약 31억-159억)		
범죄 범주	시작 지점	카테고리 범위(category range)
A	£800,000 (약 12억)	£540,000 - £2,800,000
B	£540,000 (약 8억)	£350,000 - £2,000,000

영세 기업(Micro Organisation) 매출량 £2 million 이하(약 31억 이하)		
범죄 범주	시작 지점	카테고리 범위(category range)
A	£450,000 (약 7억)	£270,000 - £800,000
B	£300,000 (약 4.7억)	£180,000 - £540,000

다음으로,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범죄행위 및 범죄자 관련 요소들을 조합하여 시작 지점에서부터 카테고리 범위에서 상향 조정 또는 하향 조정으로 할 것인지를 판별하게

11)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6, 24면.

된다.¹²⁾

양형가중인자
법률상 가중인자 과거 유죄판결로서 a) 유죄판결과 관련된 범죄의 성격 및 현재 대상 범죄와의 관련성 b) 범죄 이후 경과된 시간과 관련하여 판단
그 밖의 가중 인자들 안전을 대가로 한 비용 절감 행위의 불법적 성격을 고의로 은폐 법원 명령의 위반 공무집행방해 부실한 보건 및 안전 기록 문서 또는 라이선스의 위조 당국의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자격의 취득이나 준수에 관한 고의적인 해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

범죄의 중대성 감소 또는 양형감경요인
범죄전과가 없거나 관련 또는 최근 전과 없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증거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높은 수준의 수사 협력 충실한 보건 및 안전 기록 작업장 내 효과적인 보건 및 안전 절차의 실행 자체 보고, 협력 및 책임의 수용 범죄자의 책임범위를 벗어난 다른 요인들이 사망에 기여한 경우(단 피해자의 행동은 다른 기여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듯함. 범죄자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근로자 또는 타인을 보호할 것이 요구됨.)

이러한 요인들은 완전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으로 가중 또는 감경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¹³⁾

12)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6, 25면.

13) 예컨대 Murray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진지한 반성도 고려하였으며, 이와 같은 법원의 적절한 고려는 양형지침에서도 유효하다.

(3) 3단계: 매출에 기반한 벌금이 범죄자 전체의 자산에 비례하는지 확인

법원은 벌금의 경중을 반드시 반영하고, 범죄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2003년 형사사법 제164조에 따라 적정 수준의 벌금을 확정하여야 한다.¹⁴⁾

벌금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평가하려고 할 수도 없고 시도하지도 않는다. 벌금은 처벌의 목적, 즉 범죄를 범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상쇄를 통해 범위반을 감소시켜야 한다. 벌금은 경영진과 주주들이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과 대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당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2단계에서 책정한 벌금을 “한발 물러서서(back step)”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여야 한다. 조정은 벌금의 하향 또는 상향 뿐만 아니라 양형범위 이탈을 포함한다.

법원은 판결을 확정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조직의 수익성이 관련 요소가 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작다면 하향 조정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경우 상향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용 회피 또는 영업 절약을 포함하여 범죄로부터 파생된 수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일반적으로 2단계에서 책정한 벌금에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벌금이 위반한 기업을 폐업시키는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 역시 관련된다. 어떤 경우에는 폐업이 허용가능한 결과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반 기업의 재정적인 벌금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은 납부에 대한 유예를 허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벌금액을 수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4) 4단계: 제시된 벌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타의 요인 고려

법원은 수익성 및 벌금이 범죄자의 능력이 미치는 영향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여 양형지침 이탈을 포함한 벌금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¹⁵⁾

예컨대 벌금이 공공단체나 자선단체에 부과되는 경우, 위반한 기관이 해당 벌금으로

14)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6, 25-26면.

15)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6, 26면.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 벌금 액은 상당히 감소되어야 한다.

(5) 5단계: 검찰에 대한 협력과 같은 양형감경요소들의 고려

법원은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the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제73조와 제74조(피고인에 의한 협력: 형의 감형 또는 재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범죄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제공한 협력으로 인해 감경받을 수 있다.

(6) 6단계: 유죄 인정(Guilty Plea)에 따른 감경

법원은 2003년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제144조와 유죄인정 지침(the Guilty Plea guideline)에 따라 유죄인정에 따른 어떠한 잠재적인 감경요인이든 고려하여야 한다.

(7) 7단계: 배상과 부수적 명령

모든 사건에서 법원은 공표명령이나 배상명령,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부수적인 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¹⁶⁾

(가) 공표명령(Publicity Order)(기업과실치사법 제10조)

기업과실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표명령이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은 특정한 방법으로 공표될 수 있다.

a) 유죄판결 사실 b)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c) 벌금 액수 d) 시정명령의 조건
공표명령의 목적은 억제와 처벌이다.

(i) 동 명령은 법 제10조(1)에 따라 공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범

16)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6, 27면.

죄행위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ii) 명령은 일반적으로 공표하여야 할 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공표 또는 광고의 규모를 지시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주주,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유죄판결을 알릴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자의 웹사이트에 판결문을 게재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공판절차간 뉴스 보도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 신문발표는 불필요할 수 있지만, 만일 신문에 게재되어야 할 경우에는 신문 공표의 형태, 필요한 삽입 면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 (iii) 검찰은 선고 공판에 앞서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제안된 명령 형식의 초안을 범죄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판사가 직접 명령의 최종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 (iv) 요구되는 공표와 이와 나란히 게재되는 위반자에 의한 어떠한 진술도 공표와 명 확히 분리되고 식별되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표명령은 벌칙의 일부이다. 벌금을 확정할 때에는 예외적 준수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시정명령(Remediation)(기업과실치사법 제9조)

범죄자는 선고시까지 범죄와 관련된 특정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감경을 박탈당한다. 반대로 집행가능할 만큼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다면 시정명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찰은 기업과실치사법에 따라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 가능한 명령의 형태를 고지하여야 하고, 판사는 그러한 명령의 최종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령의 준수 비용은 벌금산정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시정명령은 이미 그렇게 수행 되었어야만 하는 것만을 요구하게 된다.

(다) 배상명령

범죄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배상 명령의 부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망이나 중상과 관련된 경우 배상평가는 일반적으로 복잡하며 통상 보험에 의하여 배상된다. 대부분의 경우, 배상은 민사법정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로 어떠한 명령이 내려지지도 않아야 한다. 만일 배상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의 경제적

수단이 제한적일 경우 다른 어떠한 금전적 벌칙보다도 배상금 지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체 경제적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소비용보다 배상금과 벌금이 우선된다.

(8) 8단계: 총체적 원칙(Totality Principle)

범죄자에게 다수의 범위반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전체 선고형이 “양형에 고려할 다른 범죄들 및 총체적 원칙에 관한 양형기준(the Offences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otality guideline)”에 따라 위반행위들에 정당하고 비례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9) 9단계: 이유(Reasons)

2003년 형사사법법 제174조는 형량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 효과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9단계를 거쳐서 최종 벌금형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형량범위를 이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Ⅲ. 기업과실치사법 양형기준의 적용사례

1. 2015년 양형기준 설정 전 사례

가. 최초 적용된 2011년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

동 사례는 2008년 9월에 일정 깊이 이상의 시험광구에서 작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동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이 토양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작업을 하다가 시험광구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2007년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이다. 회사는 기업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동시에 피고용인의 보건과 안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었다.¹⁷⁾ 그러나 이후 검찰은 입증에 있어서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하여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는 기소를 철회하고 기업과실치사죄로만 공판을 유지하였다.

재판결과 총 385,000파운드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년 38,500 파운드씩 10년간 내도록 부과받았고, 이는 총매출액의 약 116%라고 보고되었으나, 해당 사망사고 이후에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실제로는 총 매출액의 250%에 달하는 것이었다. 회사는 소규모였고, 단지 8명의 피고용인과 한 명의 이사가 있었다. 10년간의 분할 납부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인 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것을 피해가 위함이었지만, 결국은 회사는 2014년 파산에 이르렀다. 회사는 항소하였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다만 회사의 경제적 곤란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부과되지 않았다. 그 외에 공표명령의 경우, 해당 명령은 2010년 2월 15일부터 발효되었으므로, 동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동 사례는 기업과실치사죄의 벌금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기업과실치사죄 유죄의 수용가능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이전에도 산업안전청의 권고와 지침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위반행위의 심각성과 재정적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상당한 벌금은 회사를 파산시키고 근로자의 직장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였다. 또한 회사가 파산되면 이사의 가족들에게도 여파가 있을 것임을 인지하였다. 법원은 연 매출액의 25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소규모의 회사에서 그와 같은 규모의 벌금이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사용자들에게 근로자의 근무장소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각시키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2012년 Lion Steel Equipment Ltd 사건¹⁸⁾

2008년 근로자가 산업 시설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1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우선 검찰은 기업과 이사들 모두를 기소하였다.¹⁹⁾ 그 결과 회사는 기업과실치사

17)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2012] 1 Cr. App. R. (S.) 26.

18) R. v Lion Steel Equipment Ltd, July 20, 2012 (Crown Ct (Manchester))

19) 기업은 기업과실치사법위반죄와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05년의 작업장 고도규정(the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위반죄의 혐의가 주장되었고 그 결과 산업보건안전법 제33조 위반도 추가되었다. 기업과실치사법 혐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준비 청문회에서 다른 혐의 및 이사들에 대한 혐의와 분리되었다. 사망은 기업과실치사법이 도입된 직후 발생하였고, 동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기업의 이사들 3명(Palliser, Williams, Coupe)은 Berry의 고용주로서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및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로 처음에는 기소

죄 유죄판결에 의하여 3년간 480,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2년 이내에 84,000파운드를 지불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준비에 소요된 시간이 과도하고 해당 지연이 일정정도 불필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140,000의 소송비용을 84,000파운드로 감액하였다.

그 외에 검찰은 공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청구하지 않았고, 배상명령은 민사법원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판결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적용하였고, 섹션 D를 고려하여 위반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도 고려하였다. 우선 제7항의 가중요소로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위험의 명백성 및 예측가능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였으나 충분치는 않았다는 점 등 재판에서 언급한 이외의 다른 가중요소가 없다고 보았다. 반대로 제8항의 감경요소로서 첫째, 기업이 합리적인 건강 및 안전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분 수리를 위해서 기업이 고용한 자체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것들이 과거 위험중개인들의 위험평가 부문으로부터 조언을 얻은 것을 고려하였다. 특히 Berry가 사망한 후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지연되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12개월의 지연은 당사자의 재판에서의 편의를 위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의 지연은 대부분 검찰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었고, 그와 같은 재판 지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기업의 규모는 기존의 2개 사건보다 큰 편이어서, 2008년부터 2011년 매출은 약 1000만 파운드 정도이고 약 1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유죄인정을 고려하였고, 그보다 많은 벌금이 해당 기업의 사업과 나머지 142명의 직원 고용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은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회사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았고, 이사들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3년 동안 배당금을 받지 못한 사실로부터 낭비하거나 사치를 하는 기업도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원 벌금액의 20%를 감면하였고 그 결과 48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2. 2015년 개정 양형지침 적용 이후 사례

가. 2016년 Monavon Construction Ltd 사건

Monavon기업은 2013년 10월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부지에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고, 공사 기간동안 부지 주변에는 외곽 가장자리 보호울타리는 설치되었지만, 주위에 아직 금속 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로 두명의 근로자가 몸싸움 중에 임시울타리가 무너져 추락하여 즉사하였다.²⁰⁾

동 판결은 2016년 6월 27일 선고됨으로써, 2016년부터 시행되는 2015 양형지침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다. 동 범죄는 카테고리 A범주의 중대범죄로 판단되었으며, 부과된 벌금 총 550,000파운드를 2년 내에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카테고리를 A범주로 한 이유는 경비가 허술한 조명 우물에 의하여 심각한 상해의 위험성이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달 이상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현장 부근에 행인들(footfall)이 상당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감경요인으로서 회사의 안전관련 기록이 양호하고, 과거의 기소 전력이 없는 점, 사고후에 취한 구제조치 등을 고려하였다.

양형기준 2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회사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재무상 매출이 2백만 파운드 미만이므로 영세 기업(Micro Organisation)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공판진행 중에 담당 판사(Worsley)는 지속적으로 CPS에 회사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계정의 신뢰성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조정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 과실치사 건당 50,000파운드를 추가 부과하였다.

나. 2021년 W H Malcolm Limited 사건²¹⁾: 가장 고액의 벌금형 선고 사례

2017년 6월 Rugby 인근의 Daventry 국제철도 화물터미널(Daventry International Rail Freight Terminal) 운영업체인 WH Malcolm Limited가 운영하는 현장에서 축구

20) R. v Monavon Construction Ltd, 27 June 2016 (Central Crim Ct)

21) British Safety Council, Safety Management, <https://www.britsafe.org/publications/safety-management-magazine/safety-management-magazine/2021/rail-co-fined-65m-after-boy-killed-by-overhead-power-line/> (방문일: 2022. 4. 24)

공을 주우려던 11세 소년 Harrison Ballantyne이 감전으로 사망하였다.

회사는 기업과실치사법 및 산업보건안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회사가 25,000 볼트의 전압이 통전되는 가공선 장비와 화물이동이 빈번한 장소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및 회사가 통전되지 않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화물칸을 전기선 아래에 배치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고압 케이블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철도담당 수석검사인 Ian Prosser은 W H Malcolm이 무단 접근을 방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위험관리미비로 인하여 초래된 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하며, 철도업계가 무단침입방지와 이동위험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유죄판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²²⁾

회사는 기소된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3(1)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9년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규정 제3조 위반(피고용인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에 적절하고 충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²³⁾도 인정되었고, 6,500,000파운드의 벌금과 241,463.60 파운드의 기소비용 및 120 파운드의 피해자 과징금(surcharge)의 지불을 명령받았다.

해당 벌금액수는 헤트필드 철도 추락사고 이후 밸푸어 비티 레일 인프라 서비스사에 부과된 두 회사의 각각 350만 파운드, 750만 파운드의 벌금²⁴⁾ 이래 최대 규모의 건강·안전 벌금으로 추정된다.

피고 물류회사는 연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200,000,000 파운드를 초과하였다. 판사는

22) ORR, Press release, 2021/7/30,

<https://www.orr.gov.uk/search-news/company-fined-after-death-11-year-old-boy-freight-terminal>
(방문일: 2022. 4. 23)

23)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failing to undertake a suitable and sufficient assessment of the risks to the health and safety of persons not in their employment)

24) 2000년 영국 Hatfield 지역에서 열차 충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책임을 물어 네트워크 유지 및 보수회사인 Balfour Beatty의 경영진에 대하여 기업과실치사에 관한 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 임원 모두가 무죄판결 되었다. 검찰은 ① 기업에 대한 보통법상 과실치사죄, ② 최고 경영진의 보통법상 과실치사죄 ③ 임원의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지만 ①, ②에 대한 기소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③의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만 인정되어 관련 두 회사가 각각 350만 파운드와 750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책임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 양형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피고의 과책이 높음 (the defendant's culpability was High), 피해범주 1(수준 A 해악의 높은 가능성)(Harm Category was 1(a high likelihood of Level A harm))을 적용하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의 수를 염두에 두어 2단계에서 양형범주를 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판결인 2018년의 Whirlpool Appliances 사건²⁵⁾에서 사형선고가 있었음을 고려하여서, 벌금의 시작점을 400만 파운드로 상향 이동시켰고 그 범위도 260만 마운드에서 1,000만 파운드로 상향하여 이동시켰다.

판사는 동 회사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 이상의 구조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죽기 몇 년 전에 확인된 수준을 수행하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실패와 저조한 시행 이력, 그리고 피해자의 죽음이 현장에 있었던 적어도 세 명의 아동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도 650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고려하였다.²⁶⁾

3. 평가

가. 2015년 양형기준 개정 전

2015년 양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건들은 소규모 또는 영세기업에서 발생한 단일의 사망사고로서 피해자가 1명이거나 최대 4명²⁷⁾이었던 산업재해 또는 시민 재해였다. 해당 기업들 자체가 매우 영세하여서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유죄판결을 하였다 라도 벌금액 자체가 기대하였던 것만큼 규모가 크지 않았다. 동법은 기업에 대한 처벌로서 ‘상한없는 벌금’을 규정하였으나, 기존의 산업보건안전법에 의한 처벌보다 유의미하게 중하다고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경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물론 첫 번째 사례에서 해당 기업이 2011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결국 2014년에 파산하였으나, 이는 기업이 받은 벌금이라는 형벌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단독이사의 개인

25) Whirlpool Appliances Ltd [2018] 1 Cr.App.R. (S.) 44.

26) six pump court, 2021/08/02, <https://www.6pumpcourt.co.uk/news/6-5-million-fine-for-logistics-company-after-tragic-death-of-an-11-year-old-boy/> (방문일: 2022. 4. 25)

27) 2014년 R V MNS Mining Limited 사건. 다만 동 사건에서 기업과실치사법위반죄는 무죄가 되었다. <http://www.kennedyslaw.com/files/Uploads/Documents/Health%20and%20Safety/Kennedys%20-%20Defending%20corporate%20manslaughter.pdf>

적인 지병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2건의 무죄판결의 경우²⁸⁾,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기업의 활동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 관리나 조직되는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gross breach)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요구함으로써, 그와 같은 인과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2016년 개정 양형기준 적용 후

전반적으로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공판절차 자체가 매우 희소하여서, 2016년 2월 개정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례 자체가 많지는 않다.

다음은 검찰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동법이 도입된 이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기소건수이다.²⁹⁾

년도	건수	년도	건수
2008	0	2014	6
2009	1	2015	5
2010	0	2016	5
2011	1	2017	1
2012	1	2018	2
2013	5	2019	0

검찰이 공개한 기소건수는 2016년 이후 4년 동안 8건에 불과하였고, 이들 또한 사망자가 1명이거나 소수에 불과한 사건이어서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기준으로 인하여 벌금액이 상한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후의 판결문들은 양형기준에 따라 제1 단계에서 카테고리 A와 B를 우선 결정하여 이로부터 범주를 설정하였고,

28) R. v PS & JE Ward Ltd 2014년 6월 6일(Crown Ct(Norwich)) 및 R V MNS Mining Limited 사건을 의미한다.

29) CPS,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Request, Figures regarding prosecutions of Corporate Manslaughter since Feb 2019, 2020/3/5, 2면.

해당 기업의 규모에 따른 4개군의 선정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면서 가중요인과 감경요인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역시 우리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지만, 각각의 개별 사례들은 양형구간의 설정에 대한 설시를 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사법신뢰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 가중요인과 감경요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양형기준을 반영하여, 개별 사례마다 해당 요인들의 입증 및 인과성 판단 및 적용여부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의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기업과실치사법 적용상 문제점과 시사점

1. 기업과실치사법의 한계

가. 기업 기소로 인한 경영진 개인의 면책

동법이 제18조에 “개인책임없음(No Individual Liability)”을 통해 고위 관리자와 이사(감독자)에게 보장된 면제규정을 됴으로써 기업을 처벌할 경우 책임있는 개인감독자 또는 경영자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경영자는 대체로 최초에는 중과실치사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으나, 기업이익을 위해 유죄인정을 함으로써(a guilty plea on behalf of the company) 실제로 재판 전에 기소가 철회되고 있다.³⁰⁾

즉,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된 사례에서 거의 대부분 동법을 적용한 기업의 기소와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위반을 적용한 이사(감독자)의 기소가 처음에는 동시에 시작되었지만, 기업의 유죄인정(company's guilty plea)에 비추어 개인인 이사(감독자)의 기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기업 기소가 오히려 책임있는 개인(이사)의 면책으로 약용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30)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후 평균적으로 10개의 영국 사건 중 8개의 경우, 이사 개인은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및 보통법(Common Law)상의 중과실치사죄로 회사와 함께 기소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³¹⁾ 이에 따르면 동법 제정 전에는 과실치사죄를 범한 법인격을 찾기 위해서 법원은 동일성이론에 따라 회사의 “지휘하는 마음과 의지(directing mind and will)”의 실체로서 감독자인 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할 필요가 있었지만, 동법 제정 이후에는 어떤 개인도 회사의 과실치사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10년간의 기업 주체에 대한 유죄 판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개의 개인에 대한 중과실치사죄의 기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과실치사죄에 대한 개인들의 유죄판결은 없었다.

또한 회사가 기업과실치사죄 유죄판결을 받았을 동안, 13명의 개인 이사가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지만 2명만이 유죄를 인정했고, 1명은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집행유예였지만, 보건 안전 감독자에게 직장 관련 사망에 따른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으로 즉시 9개월 형을 선고한 사례가 한 건 있었다.

핵심사항 중 하나는 이러한 무죄 판결 중 14건(4건의 중과실치사죄와 10건의 산업보건안전법위반죄)이 배심원들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이나 판사가 기소 후 기업의 유죄인정에 따라 개인에 대한 기소를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개인에 대한 성공적인 기소 중 어느 것도 진정으로 고위 경영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다.³²⁾ 예를 들어, Pyranha Moldings Limited (산업용 오븐 도어가 자동으로 닫힌 후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기술 책임자였다. 책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근거는 안전하지 않은 비준수 설계였다. 개인이 유죄를 인정한 두 사건에서 이들은 아주 작은 회사의 단독 이사 또는 소유주였다. 판사들은 개인의 행위가 집단적인 기업 경영의 실패에 대한 광범위한 그림의 일부인 경우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 하다. 보건 및 안전의 정책과 실천에 있어서도 경영자 또는 개인보다는 기업 주체의 기소를 선호한다. 실무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협조할 의향이나 그러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기소 사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31) 이하의 내용은 Jocelyn Ledward, Corporate manslaughter: more and larger companies are due to pay the penalty, 1-2면 참조.

https://www.qebholliswhiteman.co.uk/cms/document/nfdc_corporate_manslaughter.pdf

32) Jocelyn Ledward, 앞의 논문, 2면.

나. 대형 사건에의 적용상 문제점

동법이 대형 산재나 다수인명피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함을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들은 매우 소규모이거나 중소기업에서의 단일 사망사건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Grenfell Tower사건³³⁾과 같이 다중사망의 대형 사고에 대하여 기업과실치사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다 못해서 5년 여의 기간이 지는 동안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1인 사망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은 건수이지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비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동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조사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조사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매월 단위로 업로드 함으로써 사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조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조사가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경중이 없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조사방법과 정보공개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할수록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사건의 중대성은 희석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건조사 홈페이지를 사건별로 운영하고 해당 조사내용을 공개한다면,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사법불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 저조한 적용 사례

동법이 현재까지 적용된 건수나 처벌의 양만 본다면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기업

33) Grenfell Tower 화재사건의 경우, 2017년 9월 19일 런던의 23층짜리 그렌펠 타워는 보수공사도중 화재로 전소하였고, 72명이 해당 사건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난 2022년 현재까지도 형사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실치사법은 위험형법과 유사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면책특권을 거의 훼손하지 못한다고 본다. 물론 영국의 산재사망 사고 자체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우 적다. 2020/21년 영국에서 총 142명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31명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2019/20년(111명)의 사망자 수는 다른 최근 해에 유의미하게 낮았다. 통계적 측면에서, 사망자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략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17-2020/21년 5년 동안 직장에서 사망한 평균 연간 노동자 수는 136명이다.³⁴⁾ 그러나 한해 1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9년간 공식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27건에 불과하여, 연 평균 2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2. 양형적용 상의 문제점

판결선고 당시 부과된 벌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CMCHA법의 통과에 따라, 양형지침위원회는 법에 따른 성공적인 기소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 지침을 2016년에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벌금이 회사 이직률의 백분율 범위 내에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2007] 지침 초안에서 ‘매우 중요한 후퇴’로 표시되었다. 확정된 지침은 벌금 수준을 정하는 주요 근거는 ‘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기여하는 요소들과 함께 매출액과의 연관성을 제거하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벌금은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고 징벌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적절한 벌금은 대부분 50만 파운드 이하로 되지 않으며 수백만 파운드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terecycle [Rotherham] Ltd³⁵⁾ 사건에서는 재판 시작 시점에 실제 관리 중인 회사에 50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법에 따른 현행 양형 관행의 빈곤에 대한 인식은 현재 검토 중인 새로운 일련의 지침 초안을 촉발시켰는데, 이 지침 초안은 비록 제안이

34) 영국 통계청, Number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in Great Britain from 1974 to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2272/fatal-injuries-at-work-great-britain-by-employment-y-on-y/> (방문일: 2022/6/2)

35) R. v Sterecycle (Rotherham) Ltd, November 7, 2014 (Crown Ct (Sheffield)) 2011년 1월에 직원 5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인 해당 기업 내부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경영진이 유죄인정(Guilty Plea)를 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더 큰 규모의 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벌금과 이직률 사이에 더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안되었다.

영국에서 실제로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점에서 CMCHA법에 따른 유죄판결의 비율은 수사와 기소면에서 극적인 실패처럼 보인다고 평가된다. CMCHA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상징적 시도로서, 그러나 이는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누리는 면책특권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한 동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액을 ‘상한 없는 벌금’이라고 하였으나, 순이익이나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현저하게 적은 벌금액이 부과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응보나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 즉, 상한 없는 벌금의 의미를 최초의 사건처럼 기업과실치사로 인하여 범죄를 범한 기업이 파산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라고 해석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다. 특히 W H Malcolm Limited 사건에서 6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 것 이외에는 매출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벌금액이 부과되었으며, Malcolm Limited 사건 또한 벌금액 자체는 규모가 크지만 실 매출액이 2억 파운드 이상임을 고려할 때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한 없는 벌금의 의미가 무색해 진다.

3.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에의 시사점

가.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현재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이 2016년에 설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 기준은 과실치사상범죄와 같은 범죄군으로 분류되어 대유형 2로서, 도급인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및 이로 인한 치사의 결과에 대하여 설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범죄가 과실치사상범죄와 함께 분류된 이유는 해당 의무위반이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유사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해당 치사의 결과발생이 과실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수 있으나 치사의 결과는 과실이여야 하므로 범죄성립구조는 과실범과 같고, 따라서 기본구간과 감경 및 가중구간 역시 과실치사상 범죄와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군에 공통되는 양형기준 이외에, 특별감경요소로서 행위인자에 사고발생경위에 특히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중인자에 의무위반정도가 중한 경우 및 유사사고의 반복발생을 두고 있고, 일반양형인자중 행위자가중인자로서 사고후 구호조치 미이행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양형인자들은 매우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범죄군에서의 양형인자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위반으로 인한 자유형 유죄판결 자체가 매우 적어서 기존의 판례의 축적을 통해 양형인자를 추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경험적 요소로서 과거 판결을 토대로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하여 규범적 요소를 가미하는 형태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전례의 한계인 것이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외관상 유사해 보이지만 서로 양립가능한 독자적 의무로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³⁶⁾ 이에 따르면 양 의무는 그 내용상으로 매우 유사한 면이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경영 책임자 등이 관리·감독할 의무라고 이해한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이외에 대체로 산업보건안전법상 의무 위반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게 된다. 기업과실치사법 제1조는 그 기업의 활동이 고위 관리직(senior management)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위반에 있어서 상당한(substantial) 요소일 것으로 요구하며, 고위 관리직이란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관리되고 조직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 관리나 조직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동조 제4항(c)).

동법 제1조에 따라 기업은 활동이 관리 또는 조직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직이 사망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관련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

36) 심재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9, 51면 이하.

면 상한없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때의 관련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란 Sec. 2(1)의 규정내용이며, 이는 민법상 발생하는 의무로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새로운 법적 의무를 생성한 것은 아니다.

한편 산업보건안전법 Sec 2(1)은 모든 고용주(기업)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넓은 보통법상의 안전주의의무위반으로서, 손해배상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동법상 감독관에 의한 조사 및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³⁷⁾ Sec 3(1)은 고용주(기업)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사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용된 근로자 이외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이외의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서, 기업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사람들, 기업에의 구내 방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일반대중도 포함된다.³⁸⁾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모두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라는 단어가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하게 된다.

이 경우 사람이 실제로 위험에 처했을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업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⁹⁾

판례는 기업이 실무차원(operating level)에서 모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⁴⁰⁾ 또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이란 사고위험을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배치된 조치와 비교형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바, 위험은 적지만 조치가 큰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⁴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의 설정 또는 양형기준 설정 전 법원의 양형판단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국의 양형기준은 기업의 규모를 매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대기업, 중견

37) G. Janner, *Compendium of Health and Safty Law*, Random House Business Books, 1982, 12면 이하.

38) R v Tangerine Confectionery (2011) EWCA Crim 2015

39) R v Board of Trustees of the Science Museum (1993) 1 WLR 1171

40) R v British Steel (1995) 1 WLR 1356

41) Austin Rover Group Ltd v HM Inspector of Factories (1990) 1 AC 619

기업, 소기업, 영세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벌금형 산정구간을 달리하고, 각 기업별로 다시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A, B 카테고리별로 벌금형의 기본구간을 차별화함으로써 벌금형이 기업의 존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각 양형가중요인과 감경요인을 구체화하고 있는 바, 가중요인으로는 유죄판결 전력과 안전비용절감, 행위은폐, 법원명령위반, 안전관련 기록의 부실, 고용부 조사의 회피나 해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 등을 들으로써 해당 구간에서 구체적인 벌금형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감경요인으로는 범죄전력없음, 수사협력,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여부, 성실한 보건·안전기록, 책임의 수용정도 및 다른 요인들의 기여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양형기준에서의 양형인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공표명령, 시정명령 등 부가명령의 부과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부가명령의 부과여부를 결정함에도 차용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판결에 있어서도 해당 요소들을 판결문에 명시하여 인정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V.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형주의가 아니다. 동법은 산업현장에서 고용주 등 고위경 영진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의무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단기적으로 동법의 효과가 발휘되어 산업재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동법의 적용 역시 보다 강한 처벌, 보다 많은 벌금형의 선고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나, 기존의 전례가 없는 제정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 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동법의 적용시 인과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양형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양형의 구체적 판단 및 고려되는 양형인자의 구체화 등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기준을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 사례에 적용된 결과를 살펴보았다. 물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완전히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법인처벌을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마지막 단추까지의 오류를 잡기란 매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이른 후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학계와 실무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점은 사실관계의 판단보다도 양형범위 및 양형인자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의 정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비와 같이 양자의 의무는 양립가능한 독자적 의무들이고, 이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반드시 양형에서 동등하게 평가될 수도 없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업재해나 시민재해가 가지는 사회적 여파는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급속도의 성장을 하면서 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지켜보아 왔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양형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산업근로현장을 구축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도 시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 제6조와 제7조를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제 35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2/3
- 김재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12
- 김혜경/이진국/도종진/차종진, 국외 기업범죄 유형 분류와 법령상 제재수단 규정 등 실태 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12
- 심재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9
- 심재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9
- 전형배,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노동법포럼 제34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11
- 조흡학,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소고”, 노동법논총 제 53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12
-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9
- 한성훈,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4

(국외 문헌 및 판례)

Austin Rover Group Ltd v HM Inspector of Factories (1990) 1 AC 619

- British Safety Council, Safety Management, <https://www.britsafe.org/publications/safety-management-magazine/safety-management-magazine/2021/rail-co-fined-65m-after-boy-killed-by-overhead-power-line/>
- Corporate Manslaughter, Updated: 16 July 2018|Legal Guidance, Violent crime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corporate-manslaughter>
- CPS,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Request, Figures regarding prosecutions of Corporate Manslaughter since Feb 2019.
- G. Janner, Compendium of Health and Safty Law, Random House Business Books, 1982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Northern Ireland v JMW Farms Ltd Unreported May 8, 2012 (Crown Ct (Belfast)) <https://www.orr.gov.uk/search-news/company-fined-after-death-11-year-old-boy-freight-terminal>
- Jocelyn Ledward, Corporate manslaughter: more and larger companies are due to pay the penalty, https://www.qebholliswhiteman.co.uk/cms/document/nfdc_corporate_manslaughter.pdf
- ORR, Press release, 2021/7/30,
- R v Board of Trustees of the Science Museum (1993) 1 WLR 1171
- R v British Steel (1995) 1 WLR 1356
-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2012]
- R v Tangerine Confectionery (2011) EWCA Crim 2015
- R. v Lion Steel Equipment Ltd, July 20, 2012 (Crown Ct (Manchester))
- R. v Monavon Construction Ltd, 27 June 2016 (Central Crim Ct)
- R. v PS & JE Ward Ltd June, 6, 2014(Crown Ct(Norwich))
- R. v Great Western Trains Company Limited, July, 27, 1999
- R. v Sterecycle (Rotherham) Ltd, November 7, 2014 (Crown Ct (Sheffield))

Analysis of Sentencing Factors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UK

- In relation to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

Kim, Hyekyung*

Although the exis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ried to cope with casualties at industrial sites, including punishment of industrial accidents,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imposing more serious responsibilities and prevent it was difficult to be evaluated as a sufficient legislative measure. In addition to industrial accidents, the Act sought to secure the safety rights of not only workers but also ordinary citizens by targeting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businesses operated by employers, corporations, or institutions, etc., but also by operating public facilities or handling dangerous materials.

On the other hand, the best example of borrowing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law is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UK establishes a dualization of punishment, and individual punishment applies occupational negligence homicide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mmon law, while corporate punishment applies corporate manslaughter.

In addition, the British Sentencing Commission announced the final sentencing guidelines from February 1, 2016, reorganizing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corporate murder and manslaughter. Since the law legislated an “unlimited fine” for punishment due to the specificity of punishment for companies by sanctioning redial orders and public order for violations, the Sentencing Committee also proposed more

* Ph. D, in Law,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specific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how to apply it.

Here aims to examine in detail the sentencing standards applied to the UK's corporate and manslaughter laws (II), and when such sentencing standards are applied, check through the court's ruling on what sentencing factors are specifically considered and reflected in serious accidents (III). And then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Death Penalty Act and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IV). In the future, it is reasonable to set and implement sentencing standards lik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considering that the sentencing standards set by the Sentencing Standards Committee are re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normative factors for the results of the judgment.

❖ Key words: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Fatal Industrial Accident, Sentencing Criteria, Sentencing Factor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Sentencing Commission